

1. 개정이유

특수임무유공자 등이 발급받는 특수임무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 등의 기재 사항 중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은 추가하고, 주소 부분은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‘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’를 추가

나. 특수임무유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생년월일 추가
- 등록일자 추가

다.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확인대상자에 대한 주소는 개인의 사생활 등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많아 삭제

라. 선순위자를 별도 분리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00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7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총리령 제 호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.

‘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’

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특수임무유공자증 등) ② 영 제8조제6항에 따라 특수임무 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다. <u><신 설></u>	제4조(특수임무유공자증 등) ② - ----- ----- ----- -----. 이 외에 확인하는 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.

특수임무유공자(유족 또는 가족) 확인서

발급번호			
특수임무 유공자	대상구분	보훈번호	상이등급
	성명	생년월일	등록일자
선순위자	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		성명
확 인 대상자	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
용도 및 제출처 (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)	용도		제출처

위 확인대상자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조 또는 제4조의 적용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지방보훈청장
보 훈 지 청장

직인

유의사항

※ 이 확인서는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※ 용도 및 제출처란은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
확인				
우	주소		전화번호	모사전송번호
담당부서명	과장	주무	담당자	전자우편주소